

의안 번호	제2663호~제2669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5. 10. 22.(수) 10:00
제372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

검토보고서

○ 안건 : 7건 (조례안 2, 개정조례안 3, 폐지안 2)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김영중

목 차

□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
□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	... 5
□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... 7
□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9
□ 장성군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	... 11
□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... 13
□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63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국민제안 규정」 제5조에 의거 제안 자격 범위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제안자격 범위 확대(제1조 ~ 제7조)
 - (현행) 장성군민
 - (개정) 장성군정에 관심있는 자
- 제안의 종류(제4조)
 - (현행) 군민제안
 - (개정) 국민제안

4. 관련법령

- 「국민제안 규정」(대통령령 제33649호)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「국민제안 규정」 제5조에 의거 제안 자격 범위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- 기존 조례에서의 제안자는 장성군민 또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의 범위를 장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,
- 기존 조례 제1조에 제안제도의 근거로 인용한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가 2022년 1월 1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64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, 함평군, 영광군 각 3개군 합의에 의해 「전라남도 서북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개요
 - 명칭 :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
 - 구성 : 3개 군(장성 · 함평 · 영광)
 - 추진기간 : 2014년 ~ 2017년
 - 추진목적 : 생활권별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
 - 주요내용
 -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공동 협약 체결 : 2014. 2.
 -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 : 2014. 2.
 - 지역행복생활권(농어촌생활권) 사업 공동 추진
 - ; 생활권 치매거점 병동 사업('14~'15)
※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내 치매전문거점센터 건립
 - ; 재난재해 공동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사업('15~'17, 함평군-영광군)

○ 폐지사유

- 2017년 이후 회의 미개최로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 약화
- 「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」구성 3개 군 폐지 합의
 - 2024. 09. : 행복생활권 협의회 존치 여부 의견 조회(함평 → 장성, 영광)
 - 2024. 10. : 행복생활권 협의회 존치 불필요 의견 회신(장성, 영광 → 함평)
 - 2024. 11. : 3개 군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합의
- ※ 함평군('24. 12.), 영광군('25. 03.) 폐지 완료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- 「지방자치법」제175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

5. 검토의견

- 본 폐지안건은 2014년 우리군과 함평군, 영광군 등 3개군이 생활권별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임.
- 협의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, 행정환경 변화 등 더 이상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됨.
- 이에 따라 2024년 11월 3개군이 모두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폐지 보고하는 사항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65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관광과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·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재단의 설립 근거 및 법적 형태 명시 (제3조)
 - 장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 추진
- 재단의 주요 사업 범위 규정 (제4조)
 - 문화정책 기획, 축제·관광상품 개발, 문화유산 보존, 관광마케팅,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·예술·관광 전반을 아우르는 12개 사업 수행
- 재정 운영 및 출연금 사용 근거 마련 (제6조~제8조)
 - 군 출연금, 자체 수익, 수익사업 등으로 재정 구성 / 군은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가능
- 조직 구성 및 임원 임명 체계 정립 (제9조~제11조)
 - 이사장(군수), 상임이사 포함 이사 및 감사 구성 / 임원추천위원회 운영, 이사회 설치 및 의결구조 명확화

- 군의 관리 · 감독 및 위탁 사무 명시 (제13조, 제15조, 제16조)
 - 군수는 업무 위탁·대행 가능, 필요 시 검사·감사·시정 요구 / 위법 시 출연금 반환 및 제재 가능
- 재단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규정 (제17조~제18조)
 - 해산 시 잔여재산은 장성군에 귀속되며, 공익사업 또는 유사 목적의 법인에 활용 가능

4. 관련법령

-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(지방자치단체의 출자 · 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·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,
-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·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항의 신설 등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66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장성군 노인 의료·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목적 (안 제1조)
 -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·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·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-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
-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 - 군수는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- 통합지원 사업 추진(안 제5조, 제6조)
 -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·요양·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관련 서비스를 규정함

○ 의료 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(안 제8조~제11조)

- 지역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 설치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책 및 지역계획 수립을 심의할 통합지원협의체 운영,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을 규정함

4. 관련법령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장성군 노인 의료·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67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아동·청소년·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이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개별 조례로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저하되어,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장성군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」 폐지

4. 관련법령

- 「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13조, 제29조
- 「장성군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」 제16조
- 「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」 제3조
- 「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폐지 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·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이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개별 조례로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저하되어,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68호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계획 수립·시행,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제안·조정·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신설(안 제40조 제1항 ~ 제3항)
 -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기능, 구성,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

4. 관련법령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9조(여성친화도시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계획 수립·시행,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제안·조정·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669호
 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 - 제출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 - 회부일자 : 2025. 10. 2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 삼서면 공중목욕장 준공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4. 관련법령 :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장성군 삼서면 공중목욕장 준공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 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